

「노원구 주민자치지원단」 위탁운영법인(단체) 모집공고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수탁기관 선정)의 규정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지원하는 「노원구 주민자치지원단」 위탁운영법인(단체)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1. 위탁사업개요

가. 사업명 : 노원구 주민자치지원단 민간위탁 운영사업

나. 위탁기간 : 2027. 1. 1. ~ 2029. 12. 31.(3년)

다. 위탁사업비 : 연 237,760천원 내외(2026년 기준)

(※ 위탁사업비는 구의회 예산심의 결과 및 사업계획 조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위탁사업 내용

- 구·동 민관협력체제 구축
- 주민자치지원단 구성 및 인력 운영
- 동 자치회별 현장 담당 지정 및 수시 지원
- 주민자치회 사무장(사무국) 활동 지원
-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등 주민자치 주요 절차에 따른 총괄 및 지원
- 주민자치회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주민자치회 사업 홍보 및 아카이빙
- 사업 모니터링 및 컨설팅
- 그 밖에 주민자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신청자격

가. 주민자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노원구 소재 법인 또는 단체

(정관 또는 회칙상의 목적이나 주된 사업에 ‘주민자치’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것)

나. 신청제외 대상

- 정치·종교적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는 제외
- 법인(단체)의 주사무소가 노원구가 아닌 경우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고 해당 처분기간 중에 있거나, 보조금 환수조치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법인 또는 단체

3. 모집공고 및 접수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10. 1.(목) 09:00 ~ 2026. 10. 16.(금)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방문 접수(이메일, 우편 접수 불가)

※ 평일 점심시간(12:00~13:00),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다.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청 자치행정과 자치지원팀(본관 6층)

4. 수탁기관 심사 및 선정 결과 발표

가. 심의일시 및 장소 : 2026. 11월 예정

○ 제안설명 시간, 발표순서, 참석인원 및 발표자료 제출방법 등 세부사항은 접수기관에 별도 통보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제안설명에 불참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나. 심의방법 :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수탁 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선정

다. 선정기준

○ 심사 기준

연 번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1	책임능력 및 공신력 (20점)	법인·단체 설립취지와 수탁사업의 적합성	10
		법인의 사업수행 역량 및 대표자의 추진 의지	10
2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30점)	위탁사무 운영목적과 사업계획의 부합 여부	10
		사업실행 전략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10
		사업계획의 참신성(기획 아이디어 등)	10
3	사업수행 역량 (30점)	운영인력 및 조직구성의 전문성 및 효율성	15
		최근 3개년 주민자치·지역공동체 분야 위탁운영 실적(2024. 1. 1.~ 공고일 현재)	15
4	재정운영 계획 적정성 및 효율성 (10점)	예산 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	10
5	지역사회 기여도 (10점)	지역사회 협력 및 자원 공유 기여도	10
총 점			100

○ 수탁자 선정 : 선정심의위원회 심사결과 평가점수 70점 이상 중 최고득점 법인 또는 단체

- 최종 평가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 반올림,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표시

- 최고 점수가 동일한 경우 ①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② 사업수행 역량 ③ 책임능력 및 공신력 분야의 고득점 순으로 선정함
분야별 점수도 동일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결정

※ 1개 법인 또는 단체만 신청하더라도 심의위원회 심사 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선정

라. 심의결과발표 : 구청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선정심의위원회 심의 후 7일 이내)

마. 협약체결 : 결과발표일로부터 20일 이내

※ 선정된 수탁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선정이 취소된 경우,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기관 중 차순위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음. 다만, 적격 차순위 기관이 없는 경우 재공고할 수 있음.

5. 제출서류

- ① 수탁 신청서(서식1)
- ② 기관 현황 및 사업실적(서식2)
- ③ 사업계획서(서식3)
- ④ 법인/단체 관련 서류
 - (법인)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법인 인감증명서(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법인 정관 각 1부.
 - (단체)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회칙(또는 정관), 단체대표 인감증명서 각 1부.
 - 법인·단체의 대표자 이력서 1부.
- ⑤ 신청자격 및 제출 자료에 대한 증빙서류
- ⑥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서식4) 1부.
- ⑦ 수탁 공모 서약서(서식5), 청렴계약이행서약서(서식6) 각 1부.
-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7) 1부.
- ⑨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협약서(서식8) 1부.
- ⑩ 기타 참고자료 등

※ 서류 제출방법

- 출력물: 제출서류를 A4용지 책자 형태로 편철·합본한 후 총 10부 제출(원본 1부, 사본 9부)
 - 원본에는 법인·단체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고,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 상기 제출서류를 순서대로 합본하고 전체 쪽번호 부여
- 전자파일: 한글파일로 작성, 담당자 이메일(2009022897@nowon.go.kr)로 별도 제출
- 발표자료: 사업계획 발표자료의 제출방법 등은 추후 별도 안내

6. 위탁조건

- 가. 위탁범위 : 공고문 제1항의 위탁사업 내용 및 협약서에서 정하는 사항
- 나.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우리 구가 제시하는 협약서에 따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다. 수탁자는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라. 수탁자는 구의 지도·감독 및 감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마. 위탁금은 위탁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관계 법령 및 회계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 바. 수탁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위탁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위탁에 따른 권리·의무를 양도할 수 없다.
- 사. 제출서류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관계 법령·조례 또는 협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위탁사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7. 기 타

가.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는 접수 후 원칙적으로 수정 또는 교체할 수 없음. 다만, 구가 제출내용의 사실 확인 또는 누락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신청기관은 지정된 기한 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하며, 보완자료를 통해 당초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다.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원구의 결정에 따름.

라. 기타 사항은 노원구청 자치행정과(☎ 02-2116-31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